

2019년도 제2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11. 27.(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회의안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9건(안건번호 제2019-156340호~제2019-156399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안전번호 156340-156399호 총 69건의 게시물은 불법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을 통하여 공중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본 심의안건은 ☆☆☆☆,★★★★,●●●,○○○○,△△△△ 등에서 복제전송된 불법복제 음악콘텐츠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에게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로서 저작권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포가 뚜렷하여 합법저작물 시장을 위축시켜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가결 의견임

- C 위원 : 본 심의에 상정된 60안건은 69개 음원 저작물의 불법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전송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다. 채증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때,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저작권 법에 의해 시정 조치 하는 것이 적절하다.

- D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음악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 예컨대 (음악) Love Poem (가수, 아이유), (음악) Highlight (가수, 노태현), (음악) Dream of You (가수, 레인보우), (음악)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가수, 노을) 등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번 불법 복제 전송된 음악 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9년 제2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27.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